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李 奎 億
李 在 亨

I. 序

- II. 企業結合
- III. 企業集團
- IV. 經濟力集中 對策

I. 序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수의 企業이 동일한 所有經營體制로 통합되어 있는 企業集團(소위 “財閥”)은 종래의 經濟發展過程과軌를 같이 하면서 확장되어 이제는 우리 經濟의 중요한 構造的 特徵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에 따라 經濟力이 소수의 대규모 企業集團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최근에 이에 대한 政策設定을 위한 論議가 일층 고조되고 있다. 經濟力集中에 수반되는 經濟的・經濟外的 効果는 우리나라 經濟社會의 展開方向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經濟構造의 改編을 모색하는 현시점에서 經濟力集中現象의 原因과 効果를 올바로 인식・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經濟力集中의 母體인 企業集團의 現况, 生成原因 및 成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經濟力集中 對策의 基本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힘이란 社會的 關係內에서 자신의 意志를 他人들의 賛反意思에 구애되지 않고 실행하는 것으로서 타인들의 行動樣態를 설정하는 조건을 변경시키거나 그들의 價值 내지 選好體系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經濟力 (economic power)을 經濟領域에서 작용하는 經濟主體의 힘이라고 한다면 이는 經濟活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資源이나 手段의 組織的 所有에 근거를 가져야 하므로 그러한 所有量의 多寡에 따라 經濟力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現代資本主義 經濟에서 가장 중요한 經濟組織은 企業이므로 經濟力은 결국 經濟資源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는 소수의 企業에

筆者：李奎億—韓國開發研究院 先任研究委員
李在亨—韓國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

귀속하게 되지만 우리의 관심은 單一市場에서의 市場力(market power)이나 多生產物企業의 단순한 多變化力(diversification power)이 아니라 여러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企業이 1人 또는 그 家族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所有·支配되면서 일부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獨寡占的企業이 市場力を 보유함으로써 다른企業보다 우월한 총체적 競爭力を 갖는企業集團의 複合力(conglomerate power)에 있다. 다시 말하여 本稿에서는 經濟力集中을 大規模企業集團의 所有集中과 複合力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本稿는 序에 이어 第Ⅱ章에서 企業結合의 動機와 効果, 企業結合과 競爭制限, 그리고 企業結合의 規制를 다룬다. 企業結合은 企業集團을 형성하는 構造的要因이므로 이를 多面的으로 이해하는 것은 經濟力集中現象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데 긴요하다. 第Ⅲ章에서는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現況과 그生成原因 및 成果를 검토하고 끝으로 第Ⅳ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經濟力集中對策의 기본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企業結合

1. 企業結合의 動機와 効果

企業集團은 企業結合을 통하여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企業結合은 獨립된 企業들을 人的·物的·資本的結合을 통하여 동일한 管理體制下에서 企業活動을 영위하도록 조직하는 것으로서 企業의 成長이나 市場의 支配를 위한 대

표적인 수단이 된다. 企業結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그 効果나 動機도 다양하지만 아래에서는 本稿의 目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다루기로 한다.

企業結合의 類型을 결합되는 기업들의 製品販賣市場間의 관계에서 보면 同種製品 内지 隣接製品 生產企業間의 水平(horizontal)結合, 投入物供給企業과 投入物需要企業의 垂直(vertical)結合, 그리고 企業間에 水平의이나 垂直의인 關係가 없는 異種市場內 企業間의 複合(conglomerate)結合으로 분류할 수 있다. 企業結合의 類型은 또한 結合方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資產 및 營業의 전부 내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인수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吸收合併(merger), 新設合併(consolidation), 資產取得(asset acquisition), 株式取得(stock acquisition)이 있으며 기존의 結合關係를 보완·강화하기 위하여 任員의 兼任·派遣(interlocking directorate)을 행할 수도 있다. 企業結合은 既存企業間의 結合뿐만 아니라 廣義로 해석하면 共同出資에 의한 合作會社(joint venture)나 子會社 등 새로운 企業(de novo enterprise)의 設立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企業活動과 마찬가지로 企業結合의 動機나 企業內의 効果도 근본적으로는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겠지만 특히 企業結合의 企業外의 効果와 이에 따른 政策的 意味를 도출하기 위하여 市場에 의한 結合類型別로 논의하기로 한다.

가. 水平結合

일반적으로 水平結合의 가장 중요한 動機내지 効果로는 獨占化를 통한 利潤增大라고

지적할 수 있다. 「스티글러」(G.J. Stigler, 1968)는 多數企業의 長期均衡狀態에서 進入의自由, 市場需要의 安定性, 固定要素의回收不能性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상정하더라도 水平結合은 獨占利潤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多數企業의 長期均衡에 함축되어 있듯이 規模의 經濟나 不經濟가 없을 때에만 타당하게 되지만 그는 대부분의 產業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公존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規模의 經濟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 「윌리암슨」(O.E. Williamson, 1977)은水平結合으로 獨占力이 형성되더라도 規模의 經濟가 실현되고 이로 인한 效果가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獨占企業들이 결합 전에는 競爭的 水準의 利益만을 얻지만 결합의 결과로 獨占價格에 따른 社會厚生損失이 발생함과 동시에 規模의 經濟가 실현되어 費用切下로 인한 社會厚生利得도 발생하는 利害得失關係를 상정한 다음 현실적인 需要彈力性의 값(2 이하)을 고려할 때 費用이 약간만(5% 정도) 저하하여도 높은 價格引上(20% 정도)으로 인한 厚生損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例證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상반되는 논의는 水平結合이 規模의 經濟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있다. 이것은 각각의 경우에 실증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理論的으로는 그러한 規模의 經濟가 발생할 수 있는 원천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水平結合에 따른 規模의 經濟는, 즉 多工場企業(multiplant firm)의 經濟로서 각 공장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工場에 고유한 規模의 經濟(plant-specific scale economies)에는 변함

이 없으며 단지 다수의 工場이 單一管理體制 속에서 운영됨에 기인하는 것이다. 「쉐러」(F. Scherer, 1975) 등은 多工場企業의 經濟性으로서 地理的 工場特化(geographic plant specialization)에 따른 輸送費節減, 多量商品과 小量商品을 같은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대신 工場別로 집중시키는 不均衡的 製品特化(unbalanced product specialization), 地域別로 발생하는 需要의 우발적 급등에 대응하여 遠隔地工場에서 공급할 수 있는 集積의 經濟(economies of massed reserves)를 지적하고 있지만, 地理的 工場特化와 集積의 經濟는 市場의 공간적 범위가 넓은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企業結合과 마찬가지로 企業規模의 擴大에 따라 資本調達·投入物·購買·販賣·技術開發 등에서 費用節減의 利點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資源節約보다는 交涉力增大에 따른 것인 데 있으므로 社會的 觀點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效果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 垂直結合

垂直結合은 垂直的 生產段階間의 技術的 相互依存性(technological interdependencies) 때문에 費用을 절감하기 위하여 生產의 連續的段階가 같은 장소에서 일관생산의 흐름 속에서 時差의 지장없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적어도 통일된 계획과 경영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기술 그 자체가 垂直結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에는 去來費用, 情報費用, 내지 組織費用, 不確實性, 市場支配力 등의 不完全性이 내재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垂直結合이 이루

어지게 된다.

「코우스」(R.H. Coase, 1937)는 生產過程을 여러 投入物이 결합되어 中間財를 생산하는 연쇄 과정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垂直的 連鎖過程上의 각 단계는 市場의 價格機構를 통하거나 혹은 企業人에 의한 同一企業內의 調整을 통하여 연결된다고 한다. 그런데 不確實性下에서 價格機構를 이용하는 데는 유관한 가격을 발견하는 探索費用, 계약과정상의 協商費用, 장기계약에 수반되는 柔軟性缺如의 費用이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 내지 절약하기 위하여 거래를 内部化하게 되지만 内部化의 擴大는 企業人的 調整費用上昇으로 억제된다. 「맘그린」(H.B. Malmgren, 1961)은 「코우스」의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企業과 購買者間의 多面的 交換과 競爭企業間의 相互依存的 計劃에는 不確實性이 존재하므로 기업의 장기적 성공은 계획에 필요한 情報의 優越性에 좌우된다. 기업은 市場의 意思疏通體制 및 그 속에서 관련기업이 취할 행동에 관한 二次的 情報(secondary information)를 기업내부의 統制된 情報(controlled information)로 전환할 수 있는 한 市場에 대한 優位性을 갖게 되며 이것이 垂直結合의 動機이며 效果이다. 企業間 相互依存性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外部經濟(external economies)의 존재로서 여러 企業의 生產量과 利潤성이 밀접한 相互依存性을 가질 때 企業은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을 동시에 함으로써 結合利潤을 극대화시키려는 유인을 갖는다. 즉 外部效果로서 價格體系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垂直結合을 통하여 内部化하게 된다. 「윌리암슨」(1975)은 이러한 논리를 발전시켜 企業이 内部組織(internal organization)으로서 갖는

특성 때문에 일정한 여건하에서 市場去來를 内部化하게 된다고 하였다. 市場去來의 環境的要因은 不確實性 内지 複雜性과 少數人 交換關係(small-number exchange relations)이며 이것이 제한된 合理性(bounded rationality) 및 機會主義와 같은 人間的 要因과 결부되어 去來上의 摩擦을 초래하는 組織失敗(organizational failure)를 유발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去來가 企業組織 안에서 内部化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함축되었듯이 去來費用이 발생하는 主原因의 하나는 不確實性이며 垂直結合은 이를 해소시키려는 動機를 갖지만 不確實性이 개체하는 대상이 投入物의 可容量, 投入物의 價格, 最終需要인지에 따라 분석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린」(J. Green, 1974)은 投入物 一定比率 結合技術(fixed-proportion technology)과 投入物市場과 產出物市場의 競爭構造 및 이에 따른 投入物價格 一定의 가정 하에서 投入物需要의 確率的 變動은 일부 產出物企業을 投入物市場에서의 배급(rationing)의 결과로 배제시키게 되므로 產出物企業은 특히 非耐久性 投入物의 生產 非結合企業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垂直結合의 정도는 그러한 상반된 효과를 균형시키는 선에서 결정되는데 結合企業과 非結合企業이 공존하는 상태는 内재적으로 불안정하므로 配給狀況의 빈도와 規模의 不經濟 정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市場構造가 완전한 結合企業에 의한 投入物市場 소멸 또는 완전한 非結合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애로우」(K.J. Arrow, 1975)는 投入物 供給價格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產出物企業이 投入物의 效率的 結合을 위한 投入物들의 相對價格에 대한 豫測的 情報를 필요로 하게 되어 垂

直結合의 動機를 가지며 이러한 예측은 投入物企業을 추가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항상 개선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초적으로 競爭的인 市場도 獨占化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애로우」는 垂直結合에 의한 情報的 效率性(informational efficiency)과 獨占力(monopoly power)創造간에 利害得失關係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점은 「그린」의 결론에서도 부분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칼튼」(D.W. Carlton, 1979)은 產出物市場에서의 需要의 不確實性이 投入物市場에 전파되는 효과(transmission of uncertainty)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產出物市場의 수요가 確率的이라면 產出物企業의 投入物에 대한 誘發需要, 즉 投入物企業이 직면하는 수요도 確率의 으로 되며 投入物價格에는 投入物이 판매되지 않을 平均的 確率로 반영될 것이다. 產出物企業이 投入物을 자체생산한다면 이 確率에 따른 비용은 절감하겠지만 產出物需要가 부족하여 자체생산된 投入物이 사용되지 않을 위험을 안게 된다. 그러므로 產出物企業은 利潤增大를 위하여 高確率需要에는 자체생산한 投入物을 사용하고 低確率需要에 대하여는 投入物市場에서 投入物을 조달하면 되므로 垂直結合의 誘因을 갖게 된다. 또한 「칼튼」은 投入物企業의 수가 產出物企業의 수보다 적다면 投入物企業이 危險分散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므로 垂直結合은 社會厚生을 감퇴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垂直結合企業은 非結合企業처럼 市場에서 주어진 바대로의 投入物性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生產技術과 자체생산한 投入物의 성격을 조화시키도록 선택할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技術을 개발할 수 있다. 즉 그는 垂直結合으로 인한 市場構造의 淨態

의 非效率性과 技術發展間의 利害得失關係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린」이나 「애로우」의 결론과 유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垂直結合의 誘因과 관련하여 끝으로 지적할 것은 投入物市場과 產出物市場의 構造的 特性과 生產技術의 성격에 따라 垂直結合의 價格 및 數量效果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不確實性의 문제를 떠나서 產出物이 投入物一定比率結合技術에 의하여 생산되고 垂直結合으로 각 生產段階의 費用條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워렌-보울顿」(F.R. Warren-Boulton, 1978)이 보인 바 있듯이 두 競爭的市場의 企業間, 한 市場의 獨占企業과 다른 競爭的 市場의 한 企業間, 그리고 한 市場의 獨占企業과 다른 競爭的 市場의 모든 企業間의 垂直結合이 產出物의 價格에 따라서 生產量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連續的 獨占(successive monopoly)이나 雙方獨占(bilateral monopoly)의 경우에는 실제의 價格과 生產量이 企業間의 交涉力에 좌우되겠지만 垂直結合으로 投入物의 供給量에 따라서 產出物의 生產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같이 投入物 獨占企業은 費用節減效果가 없는 한 競爭的인 產出物產業으로의 前方垂直結合 誘因을 갖지 않지만, 「버논」과 「그래엄」(J.M. Vernon and D.A. Graham, 1971)은 投入物 結合比가 가변적이라면 그러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즉 投入物間의 대체가 가능하다면 產出物企業은 投入物의 獨占價格이 그 限界生產費보다 높은 한 投入物을 非效率的으로 결합하게 되므로 投入物 獨占企業은 產出物企業을 결합하여 投入物을 효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生產費를 저하시키고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 複合結合

純粹型 複合結合에는 水平結合이나 垂直結合이 포함되지 않지만 現실적으로 관찰되는 複合企業은 대부분 그러한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混合型 複合結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純粹型 複合結合의 動機나 効果 중에서 기업의 經營的・技術的側面에 관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水平結合이나 垂直結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複合結合의 이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안소프」(H.I. Ansoff, 1969)가 정의한 바대로 기업내 여러 활동간의 技術的・技能的 연관성에 기인하는 共同效果(synergy)이다. 共同效果는 販賣・操業・投資・經營・研究開發 등企業의 각構成部分이나 참여商品市場間에 일정한 共同要素(common factor)가 존재함에 연유한다. 「케이」(N.M. Kay, 1982)는 共同效果를 이론상으로는 市場去來를 통하여 얻을 수 있지만 앞서 「윌리암슨」이 주장한 組織失敗에 따른 費用 때문에企業結合을 통하여 内部化하게 된다고 하였다. 企業活動間의 共同效果의 連接(link)이 많을수록 市場에서의 계약은 더욱 복잡하고 費用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이를 内部化하면企業의 潛在的 利潤性은 그만큼 커지게 되므로企業은 관련성이 높은 活動分野를 결합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그러므로 共同效果는 組織體로서의 기업이 갖는 특성에 기인하여企業의 製品間相互關聯性이 매우 적은 純粹型 複合結合에서는 共同效果가 적게 될 것이다.

共同效果와 유사한 複合結合의 動機 내지 効果로서 投入物利用의 效率성을 높이기 위한 剩餘能力(excess capacity)의 활용을 들 수 있

다. 「로빈슨」(E.A.G. Robinson, 1931)은 最適企業(optimum firm)의 규모가 技術, 經營, 財務, 販賣, 危險 및 景氣變動의 다섯 가지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힘들은 각각 最適單位를 달리하므로 항상 특정한 힘에剩餘能力을 보유하며企業은 이를 소진시켜最適企業規模를 달성하기 위하여 垂直分解, 製品多邊化, 企業結合 등의 방법을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複合結合은 기업의剩餘能力活用을 통한 最適化過程으로 볼 수 있다.

複合企業은 事業分野의 다양성으로 景氣變動이나 需要變化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 효과는 事業分野間의 利潤關聯性이 적을수록 크게 될 것이다. 複合企業은 그 事業分野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單一製品企業의 집합에 비하여 위험이 적으므로 資本市場에서는企業의 將來期待收益 흐름을 할인함에 있어서 複合企業에 상대적으로 낮은 危險「프레미엄」(risk premium)을 부과한다. 따라서 複合企業은 内部收益 rate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外部金融의 調達面에서도 유리하게 된다.

2. 企業結合과 市場成果

이상에서는 類型別 企業結合의 動機 내지 効果를 논의하였다. 모든 企業結合은 效率性的 측면에서 이점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企業結合으로 特定市場의 企業數가 줄어든다면 의견상 市場構造로 나타난 競爭度가 저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企業結合으로 인하여 企業數가 줄지 않더라도 競爭制限이나 不公正去來行爲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企業

結合에 대한 規制政策은 그러한 利害得失의 개연성에 대한 事前的 評價와 經驗的 확인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가. 企業數와 市場成果

水平合併이 있게 되면 정의상 競爭者(competitor)의 數는 줄게 된다. 그러나 競爭者數의 감소가 반드시 競爭(competition)을 저하시킬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企業數와 市場成果間의 관계에 대하여 최초로 염밀한 분석을 한 「쿠르노」(A. Cournot, 1838)에 의하면, 個別企業이 자신의 生產量 및 價格決定이 다른 競爭企業의 生產量決定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가정하에서 企業數와 競爭度間에 正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構造主義(structuralism)의 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에지워드」(F. Y. Edgeworth, 1925)는 심지어 複占에 있어서도 각 기업이 자신이 설정한 현재 價格을 다른企業이 불변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가정을 하면 競爭的結果가 초래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企業間行動樣式이 다름에 따라 企業數와 市場成果間의 관계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화마」와 「래퍼」(E.F. Fama and A.B. Laffer, 1972)에 의하여 一般均衡論의 接近方法으로도 도출된 바 있다. 그러므로 水平合併이 競爭에 미치는 효과는 사전적으로 확실적인 예측을 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는 市場內 企業間 競爭樣態의 역사, 企業規模의 원초적 분포, 合併企業과 被合併企業의 規模, 合併으로 인한 市場構造의 변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獨占(monopoly)의 경우에 있어서도 潛在的 進入(potential entry)의 위협이 높

다면 의견상의 獨占企業이 獨占力(monopoly power)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나. 市場封鎖와 價格壓搾

垂直結合에 부수되는 弊害로는 市場封鎖(market foreclosure)와 價格壓搾(squeeze)을 지적할 수 있다. 市場封鎖는 한 供給者가 特定商品의 모든 판로를 장악하거나 또는 原資材市場을 獨占化함으로써 기존의 競爭者를 제거하거나 潛在的 競爭者에 대한 進入障壁을 구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垂直結合의 構造的 弊害로서 흔히 지적되고 있다. 價格壓搾은 垂直結合企業이 원료를 獨占生產하는 한편 이를 사용하는 最終財도 동시에 생산하면서 最終財만을 생산하는 다른 競爭企業에게는 高價로 원료를 판매함으로써 競爭上의 優位를 향유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에 原料企業과 最終財企業이 외형상 法的獨立性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價格差別(price discrimination)로서 不公正去來行爲가 되지만 法的單一體가 된다면 앞서 垂直結合의 動機에서 보았듯이 企業內 移轉價格(transfer price)에 관한 문제로서 不公正去來行爲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다. 交互去來

交互去來(reciprocity)는 去來相對方이 수시로 变경됨에 따르는 不確實性과 제반 去來費用을 회피하는 일면 去來關係의 지속화에 따른 人的紐帶의 강화를 도모하거나 자신의 우월한 市場力を 이용하여 구매자의 選擇權을 제한하는 데 이용된다. 이 중에서 交互去來가 문제로 되는 것은 去來相對方의 選擇權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競爭者를 간접적으로 배제

시키게 되는 경우이다. 이 가능성은 한企業의 제품 종류가 많을수록 커지게 되므로 交互去來는 특히 複合結合의 弊害로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이너」(P.O. Steiner, 1975)는 交互去來의 競爭制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詐欺的(fraudulent), 強壓的(coercive), 合議的 대지 契約的(consensual or contractual), 勸誘的(hartatory), 補償的(requisited), 非補償的(unrequisitioned), 偶然一致的(coincidental) 交互去來의 7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예컨대 詐欺的・強壓的 交互去來는 불공정한 것이지만 偶然一致的 交互去來는 정상적인 것이며 勸誘的・非補償的 交互去來는 지속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交互去來를 획일적으로 용인 또는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妥當性 여부의 판별보다는 企業結合으로 交互去來의 가능성이 증대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交互去來의 가능성은 商品多邊化로 즉 複合結合의 범위가 클수록 증대될 것이지만 交互去來機會의 단순한 확대는 偶然一致的 交互去來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할 뿐이며 문제의 핵심은 企業이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에 관한 것이다. 交互去來의 動機로는, 價格規制 등으로 인하여 활용할 수 없는 獨占力의 행사, 反復去來를 포함으로써 販賣나 購買上의 실질적인 經濟性의 달성, 새로운 市場으로의 進入이나 効率的 規模의 달성, 子會社市場에서의 掠奪的 行為, 子會社 市場에서의 非價格競爭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動機는 각각 효과가 다양하므로 詐欺的 交互去來나 偶然一致的 交互去來와 같은 극단적인 유형을 제외한다면, 企業結合으로 인한 交互去來의 競爭制

限可能性을 판별하기 위하여 交互去來의 機會, 交互去來의 실행 가능성, 交互去來가 각 市場에 미치게 될 개연적 효과 및 그러한 효과의 귀결 등을 차례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간 交互去來는 그 자체로서 規制與否가 판별되어야 하며 競爭制限의 交互去來의 개연성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企業結合을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 潛在的 競爭의 排除

한 市場의 기존 企業을 다른 市場의 企業이 결합하게 되면 企業의 數는 변하지 않지만 結合企業으로 인하여 潛在的 競爭(potential competition)이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潛在的 競爭者에게 기존 企業의 取得・引受를 통한 進入의 機會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새로운 企業의 設立을 통하여 진입 할 것이므로 競爭者의 數에 따라서 競争度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複合結合은 水平結合이나 垂直結合과 달리 市場間의 관련성이 없는 企業間의 결합이므로 이 논거는 企業의 多邊化가 반드시 기존 市場과 유사한 市場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企業은 전부 潛在的 競爭者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또한 企業의 數와 競争度間に 일정한 比例關係가 없다면 競爭者의 數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만으로 複合結合規制의 논거를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마. 墓壕效果

大企業이 中小企業型 市場에서 비교적 지배적 위치를 갖는 企業을 결합하면 結合하는 企業의 市場力이 이전되어 여타의 企業들이 적

극적인 競争을 억제하게 됨과 아울러 潛在的 競争者에 대한 進入障壁을 높일 수 있는데 이를 壓壟效果(entrenchment)라고 하며 이는 결합되는 기업을 大企業이 소유함에 따르는 構造的 원인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결합된 기업의 특수한 市場行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大企業의 進入은 때때로 활발한 競争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效率性의 우위가 없어도 市場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中小企業保護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企業結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바. 橫的補助

여러 市場에서 활동하는 企業은 한 市場에서 市場支配力を 행사하여 超過利潤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이를 다른 競争的 製品에 橫的 補助(cross subsidization)함으로써 價格을 저하시켜 競争者들을 배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橫的補助가 市場戰略으로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를 통하여 獨占的 位置를 확보하고 새로운 進入의 위협이 없이 獨占利潤을 장기간 취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競争相對가 財務能力이 취약한 中小企業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흔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판찰이다. 더우기 한 企業이 競争企業보다 낮은 價格을 책정하는 것은 그 자체를 競争過程上の 당연한 戰略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競争을 유발하는 것과 競争者를 배제하려는 것이 쉽게 판별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橫的補助의 가능성만으로 複合結合을 事前的으로 規制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사. 相互自制

壟壠效果와 橫的補助는 企業結合과 非結合

企業間의 競争에 관한 것이지만 複合結合企業間에도 競争을 相互自制(mutual forbearance)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다. 즉 複合企業間에는 여러 市場에서 競争關係에 있으므로 어느 한 市場에서의 競争的 優位가 다른 市場에서의 競争的 劣位로 상쇄되어 상호간에 暗默的 影響圈을 인정하고 多市場競爭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는 同一市場內 寡占企業間의 유사한 行動樣式에서도 볼 수 있지만 複合企業의 數와 多邊化度가 증가할수록 相互自制의 가능성은 이론상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相互自制는 새로운 市場이 대두되지 않고 經濟 전반에 걸쳐 複合企業들간의 分占比가 상당히 固着化되어 있는 淨態的 狀況에서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3. 企業結合의 規制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企業結合은 結合類型・企業規模・市場構造 등에 따라 그 經濟的 效果가 다양하며 대부분 利害得失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企業結合이 企業의 動態的 活動過程에서 菲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한 公共政策의 관점에서는 企業結合의 정당한 動機와 利點은 조장하면서 그 弊害를 제거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企業結合을 規制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利害得失을 認識・評價하는 시각에 따라 法의 構成이나 解석이 다르게 된다. 美國의 예를 본다면 수다한 구체적 判例를 제외하더라도 經濟的 民主主義와 經濟的 效率性에 관한 「제퍼슨」과 「해밀턴」의 論爭, 產業組織論에서의 「하바드」構造主義 學派와 「시카

고」價格論學派，獨占禁止法學界에서의 企業結合原因禁止論爭을 지적할 수 있다¹⁾.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學說 내지 論爭을 소개하는 대신 이제까지의 論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現行制度를 개관하기로 한다.

가. 規制의 對象과 審查基準

우리나라에서 企業結合의 規制根據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1981年, 이하 「獨占規制法」이라 칭함)의 7~10條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補助的 사항은 이 法律의 「施行令」 12~16條, 「企業結合의 申告要領」(1981年) 및 「企業結合에 관한 審查要領」(1981年)에 명시되어 있다. 「獨占規制法」에서는 納入資本金이 10億원 이상 되거나 總資產이 50億원 이상인 회사가 직접 또는 이 회사가 일정범위의 株式을 소유하거나事業內容을 사실상 지배하는 系列會社를 통하여 행하는 株式取得·任員兼任·合併·營業讓受·새로운 會社의 設立 등 다섯 가지 유형의 企業結合을 規制對象으로 한다. 規制對象企業이 競爭關係 또는 原材料 依存關係에 있는 다른 회사와 이상의 企業結合을 하는 때에는 이를 經濟企劃院 長官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結合度가 약한 株式取得과 任員兼任은 事後申告, 結合度가 강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合併·營業讓受·會社新設은 事前申告의 대상이 된다.

企業結合의 禁止를 판정하는 기준은 申告된 企業結合中 일정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會社의 규모와 형태에 관

계없이 강요 또는 기타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것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前者의 論據는 經濟的 效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이와 관계없이 行爲의 公正性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아래에서는 前者에 관하여만 논의한다.

競爭制限 여부를 판정하려면 우선 競爭이 일어나는 場으로서의 市場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獨占規制法」에서는 經濟學的 概念의 市場을 “一定한 去來分野”로 지칭하며 去來의 客體別·段階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 있거나 競爭關係가 성립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²⁾. 企業結合 審查의 핵심적 기준은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다. 일정한 去來分野의 競爭은 당해 去來分野를 구성하는 모든 去來主體의 自由競爭機能의 行事로 형성된 競爭의 狀態이므로 競爭制限은 當該市場 전체에 걸쳐 형성된 秩序로서의 競爭의 機能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企業結合이 결합되는 當事企業들간의 競爭制限만을 초래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當該市場 전반에 걸쳐 競爭機能을 유효하게 발휘시킬 수 없게 하는 힘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競爭의 實質的 制限은 結合하는 企業間에 支配·從屬·結合關係가 形成·維持·強化되고 이에 따라 市場支配力이 形成·維持·強化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점은 市場支配力이 市場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아니라 市場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合併·營業讓受·會社新設의 事前申告制에 단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企業結合規制는 원칙적으로 原因禁止論의 입장을 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企業結合審查要領」의 審查基準은 바로 이

1)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論議와 參考文獻은 李奎億·李成舜(1985)과 尹暢晤·李奎億(1985)을 참조.

2) 市場의 範圍設定은 理論的·現實的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李奎億 外(1984) 참조.

를 대변하고 있다. 즉 企業結合으로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 초래되기 위하여 우선 相互 競爭關係 또는 原材料 依存關係에 있는 회사 간에支配關係가 성립되고 이로 인하여 市場 支配力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審查要領」은 水平結合과 垂直結合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複合結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複合合併은 水平合併이나 垂直合併에 비하여 市場의 構造的 性格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며 競爭制限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原因規制 대신에 行動規制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行動規制를 위한 지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複合結合의 規制에 대한 입장이 불투명하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企業結合은 效率性 증진과 競爭制限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自由·公正競爭 그 자체에 궁극적 가치를 두지 않고 이를 國民經濟의 均衡의 發展을 위한 下位目的 내지 手段으로서 간주하는 「獨占規制法」第1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초래하는 企業結合이라도 效率性增進效果가 크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法의 第7條 第1項의 단서에서는 產業合理化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企業結合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產業合理화의 要件은 「施行令」第14條에서 產業活動의 능률증대 및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產業構造 및 組織의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 施設投資 및 運營에 거액의 資金이 필요하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調達이 어려운 경우, 公共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要件이 企業結合으로만 해결되거나 또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公共利益은 일반적 논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國際競爭力 強化要件은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企業結合의 現況과 規制事例

1981年 4月의 「獨占規制法」施行이래 1984年末까지 經濟企劃院에 신고된 企業結合은 877件에 달하고 있다³⁾. 業種別로는 製造業이 553件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建設業 90件, 運輸·倉庫業 116件, 都·小賣業 56件, 其他 62件으로 분포되어 있다. 結合手段別로는 株式取得 409件, 任員兼任 117件, 營業讓受 58件, 合併 125件, 會社新設 168件이지만 株式取得·任員兼任·合併에 있어서는 이미支配關係가 형성되어 있는 企業集團의 系列企業間에 이루어진 것이 많아 이를 제외하면支配關係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 것은 申告件數의 40.7%인 333件에 불과하다. 이것의 내역은 株式取得 95件, 任員兼任 15件, 營業讓受 39件, 合併 16件, 會社新設 168件으로서 會社新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既存企業의 結合에는 株式取得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總申告件數의 48.9%인 429件이 上位 30大企業集團에 의한 것으로서 企業結合이 企業集團의 成長 나아가 經濟力集中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企業結合을 市場形態別로 보면 水平結合 221件, 垂直結合 160件, 複合結合 496件으로 複合結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만 現行法

3) 자세한 내역은 經濟企劃院(1984) 참조.

規에 複合結合 規制指針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企業結合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原案接受가 770件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警告後 原案接受한 것이 105件으로서 是正命令處分을 받은 것은 2件에 불과하다. 이 두 건은 모두 競爭會社間의 株式取得으로서 擬合적인 水平結合에 해당한다. 즉 過酸化水素의 生産자인 「東洋化學」은 複占的 競爭者인 「韓國過酸化工業」의 株式을 50% 취득하였으며, PVC安定劑의 1位 生產業體인 「松原產業」은 2位 業體인 「大韓精密化學」의 株式을 100% 취득함으로써 각각 市場의 實質적인 獨占化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두 건의 企業結合 모두 產業合理化나 國際競爭力強化 要件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取得者에게 株式的 매각을 명령하였다. 이것은 實質的企業分割措置로서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過酸化水素의 경우 當該產業의 만성적 施設過剩으로 인한 倒產企業(failing firm)의 株式을 원매하는 타회사가 없어 결국 원소유주가 다시 매입하였다. 사실은 倒產企業引受가 企業結合의 허용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法制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III. 企業集團

1. 企業集團의 現况

가. 企業集團의 規模

企業結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대규모의 企業集團(economic group)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總資產額을 기준으로 선정한 30大 企業集團⁴⁾의 企業結合推移는 <表 1>과 같다. 1970年에는 集團當 평균 4.2個의 系列企業만을 보유하였으나 1970年代의 高度成長期를 통하여 企業結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1979年에는 集團當 14.3個의 系列企業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 기간의 특징으로는 企業結合方法에 있어서 既存企業의 取得보다도 새로운企業의 設立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는 事業認許可制와 같은 制度의 進入障壁의 회피나 不實企業의 인수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운 市場이 계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技術·經營·人力 등의 관점에서 企業集團의 우월한 능력을 이용하여 進入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970年代末에 시작된 不景氣와 對內外經濟與件의 변화에 따라 企業集團은 자발적으로 뿐만 아니라 政府의 정책적 유인에 의하여

<表 1> 資產基準 30大 企業集團의 企業結合推移

年 度	新 設	取 得	內 部 合 併	賣 却	系 列企 業 數
1970					126
1971~79	202	135	27	7	429
1980~82	30	25	31	51	402

4) 1982年末 현재 資產基準 30大 企業集團은 現代·大宇·三星·斗基·鮮京·雙龍·韓進·國際·大林·韓國火薬·韓陽·曉星·東亞建設·錦湖·三美·斗山·吳越·起亞·大韓電線·韓一合纖·코오롱·凡洋專用船·忠南紡績·高麗合纖·造船公社·京南企業·東國製鋼·三湖·大韓船洲·三益住宅等。

系列企業을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1982年末에는 集團當 13.4個의 系列企業을 보유하였다. 다시 말하여 1970年代를 企業集團의 膨脹期라 한다면 1980年代 초반은 企業集團의 整備期라 할 수 있다.

企業集團의 규모와 系列企業數는 다소간의 相關關係를 보여 예컨대 上位 5個集團은 평균 27個, 下位 5個集團은 평균 6個의 系列企業을 갖고 있다. 30大 企業集團의 402個 系列企業의 분포를 보면 製造業 222個, 運輸・倉庫業 34個, 用役業 33個, 建設業 30個, 不動產・金融業 29個, 貿易業 18個, 都・小賣業 15個, 飲食・宿泊業 11個, 其他 9個로서 企業集團은 대체로 工業資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企業集團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製造業 出荷額基準 30大 企業集團의 규모를 <表 2>에서 보기로 한다. 이들의 製造業部門 系列企業은 271個로 전체 製造業體數 35,971個의 0.75%에 불과하지만 出荷額・附加價值・資產面에서는 製造業 전체의 1/3을 넘는 占有率을 갖고 있으며 雇傭面에서도 20% 수준에 육박해 있다. 雇傭占有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企業集團의 系列企業들이 대체로 資本集約的 生產構造를 갖고 있는 한편 市場力を 보유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表 2> 製造業 出荷額基準 30大 企業集團의 規模(1982年)

(단위 : %, 個)

企業集團	出荷額	附加價值	資產	雇傭	製造業部門 系列企業
上位 5大	22.6	17.4	16.3	8.4	89
上位 10大	30.2	23.1	23.8	12.2	153
上位 20大	36.6	29.4	31.5	16.0	223
上位 30大	40.7	33.2	37.2	18.6	271

工業資本에 基底를 두고 있지만 銀行・證券・保險 등 金融產業에도 參여도를 높임으로써 工業資本과 金融資本의 결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市中銀行과 일부 地方銀行에는 복수의 企業集團이 一般株主와 함께 공동으로 參여하고 있으므로 個別企業集團의 獨占의in 銀行支配는 볼 수 없다. 현재 朝興・商業・第一・韓一・서울信託의 5個 市中銀行에는 11個, 釜山・忠北・大邱・京畿 등 10個 地方銀行에는 15個의 企業集團이 參여하고 있다. 다만 「銀行為」上의 同一人 8% 所有上限規定에서의 同一人 概念이 협소하여 실제로 단일 企業集團의 市中銀行 所有持分이 모두 이를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地方銀行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마저도 없기 때문에 最大株主인 單一企業集團의 所有持分은 실질적인支配力を 행사할 만한 수준에 달하여 있다. 26個의 證券會社중 11個는 각각 하나의 企業集團이 大株主이며 6個의 生命保險會社는 모두 非公開企業으로서 大韓教育保險을 제외하고는 각각 單一企業集團이 완전 소유하고 있다.

4. 所有集中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이상과 같은 企業集團의 규모와 아울러 企業集團의 所有・支配權의 집중을 특징으로 한다. 企業集團의 소유가 개인에 완전 집중되지는 않더라도 企業活動의 주요부분에 대한 意思決定權을 행사하는 支配力은 완전 집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企業集團의 所有集中이 단순한 富의 分配라는 차원을 넘어 經濟力集中의 문제로 되려면 이를 근거로 한 企業支配力의 형성 여부가 중요한 관점이 된다.

企業支配力은 1人에 의한 議決權株式 총수의

과반수 내지 완전 소유를 근거로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持株會社(holding company)를 통한 「피라미드」型 지배도 가능하다. 즉 소액의 資本으로 한 기업을 지배한 후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支配力を 행사할 만큼 出資하고 다시 이 기업이 또 다른 기업에 出資하는 식으로 연속적支配過程을 거쳐 가면 소액의 資本으로 거대한 企業集團을 形成·支配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出資關係뿐만 아니라 企業間相互出資(intercorporation shareholding)를 통하여 企業集團이 형성되어 있다⁵⁾. 소유의 집중은 企業公開의 부진으로 나타난다. 30大企業集團의 系列企業 중 22.6%에 불과한 91個社만이 上場法人이며, 이들의支配權도 당연히 대주주인 企業集團에 귀속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은 실질적으로 1人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예컨대 上位10大企業集團에 대한 企業集團 관련주주의 出資氣率의 단순평균치를 구해 보면 系列法人이 49.0%, 개인 대주주가 11.7%를 점유하여 결국은 이들 企業集團의 소유의 60.7%가 개인에 의하여 集中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企業集團의 多邊化

企業集團은 經濟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동 영역을 넓혀 왔지만 특히 製造業部門에서의 多邊化가 활발히 진전되어 왔다. 30大企業集團의 製造業部門 271個 系列企業의 中分類產業別 분포는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가

89個, 「纖維·衣服 및 가죽」이 49個, 「化學物과 化學·石油·石炭·고무 및 플라스틱製品」이 44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飲食料」 30個, 「第1次金屬」 24個, 「종이·印刷 및 出版」 12個, 「非金屬礦物製品」 10個, 「나무 및 나무製品」 6個, 「기타」 3個로 분포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는 30大企業集團 전체에 관한 것이며 集團別로 多邊化度를 비교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多邊化指數를 필요로 한다. 多邊化指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指數別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본고에서는 企業集團의 規模와 多邊化度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고 다만 일부 上位集團이 下位集團에 비하여 多邊化度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만을 지적하고자 한다⁶⁾. 集團別로 다양한 多邊化過程을 動態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74年과 1982年的 비교가 가능한 16個企業集團을 조사한 결과 規模의 順位가 높아진 기업은 多邊化度도 증가함으로써 企業集團의 성장은 多邊化를 매개로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상대적인 성장이나 쇠퇴의 과정을 달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多邊化度가 높아져 系列企業數와 商品數가 각각 120個와 355個에서 203個와 843個로 크게 증가하였다.

企業集團의 多邊化가 가속되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多邊化力を 초월하는 複合力를 형성하려면 다수의 個別市場에서 市場力を 확보해야 한다. 30大企業集團이 출하하는 商品數의 단순합계는 1,125個인데 이 중에서 단일 集團의 市場占有率为 1位인 것은 186個, 2位와 3位인 것은 각각 441個와 219個로서 3位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75.2%인 846個가 된다. 이러한 압도적인 市場位置은 上位 5個集團에 있어서

5) 기업 간相互出資에는 기본적으로 直接相互出資, 環狀型相互出資 그리고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複合型相互出資가 있다.

6) 이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李奎億·李成舜의 前揭書 참조.

좀더 현저하지만 規模에 관계없이 모든 集團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각 集團은 참여하는 商品市場의 대부분에서 獨寡占의 市場力を 보유하며 이것이 複合力を 형성하므로 이들의 潛在的 市場力은 단순 占有率이 나타내는 정도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企業集團間 競爭

企業集團의 潛在的 市場力이 크더라도 集團 상호간의 競爭度가 높다면 각 集團이 全經濟를 분할하여 개별 市場에서 각각 市場力を 행사하는 것보다는 일단 市場成果가 향상될 소지는 있을 것이다. 1982年の 30大 企業集團間의 商品市場 競爭關係는 <表 3>에 요약되어 있다. 30大 集團이 참여하는 商品市場은 모두 661個로서 그 중 60.5%인 400個 市場에서는 集團間의 競争이 없으며 이 중에서 168個는 單一集團의 市場占有率이 40%를 넘고 있지만 이러한 市場은 30大 集團 總出荷額의 16.8%에 불과하므로 企業集團의 규모가 獨占이나 準獨占에 기인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5個 또는 그 이상의 集團이 참여하는 市場은 18個로서 商品數나 總出荷額 占有率 기준

으로 보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參與集團의 累積市場占有率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 상의 두 결과는 市場水準에서 본다면 集團間의 競爭關係가 부분적으로만 성립될 수 있다 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30大 集團의 累積市場占有率이 60% 이상인 市場은 220個로서 集團 總出荷額의 78.6%를 점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企業集團이 참여하는 商品市場의 1/3은 하나 또는 소수의 集團이 단독기업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企業集團規模의 특징이다. 또한 2個 이상이 集團이 참여하면서 이들의 累積市場占有率이 60% 이상인 103個 市場에 대한 出荷額은 30大 集團 總出荷額의 68.1%에 달한다. 그러므로 商品市場에 있어서 企業集團間의 競争은 적은 반면 이들간에 競爭關係가 존재할 수 있는 市場은 소수의 集團이 分占하고 있는 대규모의 寡占의 또는 共同獨占의 市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商品市場은 주로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業」과 「化學物과 石油系統製造業」에 해당하여 1970年代 아래의 重化學工業 投資에 企業集團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表 3> 30大 企業集團間 競爭(1982年)

(단위 : 個)

參與企業 集團 數	商 品 數	企 業 集 團 累 積 占 有 率				
		0~20%	20~40%	40~60%	60~80%	80~100%
1個	400(16.8)	169(0.2)	63(2.1)	51(2.1)	29(2.5)	88(8.0)
2個	134(13.4)	44(1.1)	27(1.9)	20(1.8)	20(3.4)	23(5.3)
3個	80(22.5)	15(0.4)	15(2.2)	15(1.3)	9(2.0)	26(16.5)
4個	29(35.4)	4(0.8)	3(0.5)	4(1.3)	7(4.4)	11(28.4)
5個 이상	18(11.9)	4(0.2)	4(2.5)	3(1.0)	1(0.7)	6(7.4)
計	661(100.0)	236(4.6)	112(9.2)	93(7.6)	66(13.0)	154(65.6)

註: () 안은 30大 企業集團 總出荷額中 構成比임.

2. 經濟力集中의 原因

가. 市場不完全性과 企業家 能力

우리 나라의 經濟力集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먼저 開發途上經濟의 特性과 이에 대응하는 企業家의 기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이베른스틴」(H. Leibenstein, 1968)의 주장대로 開發途上經濟에서는 市場去來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生產要素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要素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은 企業家의 중요한 機能이 된다. 예컨대 資金調達이 銀行과의 직접적 교섭만으로는 곤란할 때 政治的 影響力を 동원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物質的 投入物은 물론 情報·危險負擔·資金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市場이 완전하다면 企業家는 이를 市場去來를 통하여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市場이 형성되지 않거나 不完全한 經濟에서는 企業家가 스스로 결합보충(gap-filling)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企業家는 指導力·動機賦與·危機解能力·契約에 대한 責任 등 그 產出物이 불확정적인 投入物을 사용해야 하며 投入物의 최소 소요량을 市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을 때 이를 전부 조달할 수 있는 投入物完了(input completing)의 능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企業家能力(entrepreneurship)은 稀小資源이면서 市場去來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적 投入物로서, 여러번 활용되더라도 감소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市場不完全性과 企業家能力의 稀小性이 클수록 소수의 企業家가 經濟活力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나. 經濟成長과 多邊化

우리 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企業集團의 多邊化過程과 密리의 관계에 있다. 「레프」(N. H. Leff, 1978, 1979)는 「라이벤스틴」의 이론을 연장하여 開發途上國의 企業集團을 市場失敗條件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多市場活動多企業組織으로서 이해하였다. 그에 의하면 企業集團의 多邊化는 불확실성에 대한 市場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企業組織內에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企業集團의 多邊化는 좀더 다른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초기의 經濟發展은 주로 大量消費되는 消費財 및 中間財를 생산하기 위한 先進技術의 단순한 도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술은 원래 先進經濟의 대규모 市場을 상대로 개발된 것인 한편 國內市場規模는 소득향상에도 불구하고 展示效果에 따른 소비법위의 확대로 협소해지게 되며 資本財의 輸入依存은 투자의 乘數效果도 감소시킨다. 따라서 「메르하프」(M. Merhav, 1969)의 말대로 개발초기의 技術的 依存性(technological dependence)은 자연적으로 市場構造의 獨寡占化를 초래한다. 더욱이 이러한 여건 아래 獨寡占的 企業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人的·物的資源이 집중되고 輸入制限·事業認許可 등 進入障壁으로 인하여 원초적으로 확보된 市場位置가 유지될 수 있다.

이와같이 기존시장에서는 쉽게 剩餘能力을 축적할 수 있으며 아울러 生產要素의 特化度와 需要의 彈力性이 낮으므로 企業은 多邊化의 유인을 강하게 갖는다. 多邊化는 대규모 생산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부문에서 출발하여 점차 消費規模가 적은 財貨나 短期利潤性이

낮은 財貨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企業集團間의 競爭도 점차 높아지게 된다. 이 러한 추세는 앞서 統計的으로 분석한 바 있지만 政府의 高度成長政策으로도 가속화된다. 戰略產業으로 선정된 것은 대부분 대규모의 企業能力을 요구하기 때문에 企業集團의 참여가 선호되며 이에 따라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의 혜택의 상당부분이 이들에게 귀속됨으로써 企業集團의 多邊化를 통한 成長은 가속되어 왔다.

다. 外部金融과 企業間 相互出資

企業集團의 급속한 성장에는 막대한 資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資本調達은 社內留保·株式公募·借入으로 이루어지지만 國民所得水準이 낮고 高率의 인플레下에 投機性投資對象이 산재하는 한 株式公募를 통한 大衆資本의 조달은 어렵고, 社內留保는 비록 원초적 차입이 없는 기업에게도 新規投資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高度成長을 위하여는 借入에 의한 外部金融에 의존하게 마련이며 이것이 企業集團의 所有集中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 즉 債務辨濟를 못하여 倒產이나 引受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소유는 개인이 대부분인 原初 投資者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企業集團의 多邊化過程에서의 특이한 資本調達方法으로 企業間相互出資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實物的根據가 없는 企業의 資本增殖이므로 企業集團의 형성·확장을 위한 실질적 원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促進劑는 될 수 있다. 기업간相互出資는 소유주의 所有分散 기회에도 기인하겠지만 기업확장 내지 多邊化에 소요되는 資金을 系列企業間의 資本

移動으로 중당하는 것이 다른 金融手段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金融機關으로부터의 貸出이 企業의 自己資本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반응이기도 하다. 여하간 企業集團의 系列企業들은 相互出資를 통하여 동일한 實體的 規模의 단독기업보다 외형이 커지게 되어 要素市場 및 生產物市場에서 우월한 交涉力 내지 市場力を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經濟力集中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 요인이 될 것이다.

3. 企業集團의 成果

가. 肯定的 側面

企業集團의肯定的効果는 근본적으로 企業結合을 통한 多市場活動에 있다. 즉 企業集團의 이점은 系列企業間의 資源共有와 여러 市場活動間의 公通요소로 인하여 共同效果를 얻을 수 있으므로 資源의 결약 내지 稀小資源의 최대한 활용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市場機會에 集團內의 잉여능력을 신축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적은 資源費用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企業集團이 갖는 우수한 資源의 集積效果는 규모의 확대에 수반될 수 있는 不經濟性을 극복하는 데에도 단독기업보다 어느 정도까지는 유리할 수 있다. 垂直結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市場內部化는 外部經濟性을 内部化하는 것이므로 資本形成을 증대하고 投資配分의 内部efficiency을 이를 수 있다.

나. 否定的 側面

企業集團의 긍정적 효과는 組織體로서의 성격에 기인함에 반하여 그否定的効果는 이를

초월하여 타기업과의 관계, 所有集中, 政治・社會的 要因에 의존하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며 바로 이점에 經濟力集中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다.

企業集團의 市場內部化는 集團內的 効率性은 증진시킬 수 있지만 그만큼 最小効率規模를 달성하는 단독기업의 수를 줄이게 된다. 企業集團은 또한 要素市場과 生產物市場에서 企業能力의 실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때때로相互出資・이미지擴散效果 등 制度的・架空的要因에 근거를 둔 유리한 交涉力으로 단독기업을 배제시킬 수 있다. 企業集團의 多邊化는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율성의 우위가 없이 中小企業型 市場에 진입하여 市場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企業集團은 적절한 規制裝置가 없다면 市場封鎖・價格壓搾・交互去來・壟斷效果・相互自制・潛在的 競爭의 배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競爭을 저해시킬 가능성도 갖고 있다.

이와같이 企業集團의 張창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단독기업 특히 中小企業을 제거시키고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企業人의 혁신적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競爭的 市場機能의 작동을 무력화하고 分權主義에 입각한 經濟의 전반적 効率性과 衡平性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企業集團의 系列企業間의 資本的 結合關係는 거꾸로 連鎖倒產, 즉 倒產의共同 効果를 유발할 수 있으며⁷⁾ 이에 따른 대규모의 經濟的・社會的 不作用은 일종의 退去障壁(exit barrier)을 구성하여 資源의 계속적인 낭비를 불가피하게 하기도 한다.

7) 이러한 事例는 과거의 栗山, 최근의 國際그룹의 倒產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企業集團이 갖는 否定的 効果는 이 밖에도 所有集中 내지 企業集團 擴張過程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 그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企業集團은 政府의 비호 내지 유인 아래 國民經濟의 발전에 최대한의 기여를 하지 않은 채 一般消費者와 中小企業에 불이익을 초래하면서 他人資本을 이용하여 손쉽게 獨占利潤을 획득하는 일면 이를 不動產 등 非生產的 부문에 투자하여 왔다는 인식이 국민 일부에 팽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社會的 긴장감의 조성과 經濟倫理에 대한 회의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N. 經濟力集中 對策

1. 對策의 基本方向

앞章에서는 經濟力集中의 成果를 企業集團이라는 組織構造가 갖는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經濟力集中對策을 강구함에 있어서 택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끝맺고자 한다. 企業集團에 내재하는 利害得失은 計量化될 수 없지만 원칙상 그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 부정적 효과를 제거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經濟力集中은 부분적으로 주어진 市場條件下에서의 遷者生存의 결과이기도 하므로 원칙적으로 競爭의 동기와 이에 따른 効率的成果는 인정하면서 集中化에 수반되는 否定的 効果만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기업에게 經濟的 機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2) 經濟成長에는 企業能力이 항상 필요한 일면 企業能力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한 經濟力集中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가피할 것이며 또한 企業集團間의 相對的·絕對的 position 도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企業集團의 化石화를 방지하고 制度的 요인에 의한 企業集團의 비효율적 팽창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3) 企業動機를 존중하면서 企業集團의 非效率性과 非能率의 多邊化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競爭의 압력을 부과하여 기업의 獨占的剩餘能力을 소진시키는 것이다. 國內企業의 競爭의 進入에 대한 制度的障壁과 海外競爭의 도입에 대한 輸入障壁을 제거함과 아울러 각종의 퇴거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制度的誘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企業集團에 특유한 각종의 競爭制限行為의 가능성은 배제시킬 수 있는 法的·行政的裝置도 필요할 것이다.

(4) 企業集團에 대하여 競爭의 압력을 부과함과 아울러 經濟力의 均等分配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中小企業·消費者·勤勞者들의 拮抗力(countervailing power)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企業集團 所有의 集中이 완화되지 않는 한 經濟力集中 문제의 핵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所有의 分散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촉진시키면서 이에 수반되는 所有와 經營의 분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權限의分散과 專門經營人の 책임감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6) 企業集團의 多邊化에 대한 事前規制와

事後規制간에는 行政적 편의성과 規制의 硬直性間に 利害得失이 있으므로 合理的規制를 위하여는 事後規制의 實效성을 높이기 위한行政能力의 高揚이 필요하다. 經濟力集中은 다면적 문제이므로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는 협의의 獨占規制政策뿐만 아니라 金融·租稅·輸出入·產業調整 등 각종의 부분적 政策手段間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經濟力集中에 관한 모든 정보의 廉集·公開는 企業集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대책수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社會的 여과기능을 수행하여 非效率의 經濟力集中이나 그 弊害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7) 끝으로 經濟力集中 對策으로서 企業의 經濟倫理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政策이나 法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經濟力集中에 있어서는 그 生成過程과 潛在力에 비추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倫理는 市場機能이 불완전할수록 그리고 市場力의 분포가 불균등할수록 大企業에 있어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2. 主要對策

가. 企業結合

「獨占規制法」에 마련한 企業結合規制 根據는 앞서 第Ⅱ章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듯이 일정한 去來分野에서의 競爭의 실질적 制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企業結合에 의한 經濟力集中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모든 企業結合은 다소간에 經濟力集中 効果를 수반하지만 반드시 競爭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특히 經濟力集中의 주요

경로가複合結合이고 이것의競爭制限效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현행法規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企業結合을經濟力集中防止내지 완화의 관점에서 규제하려면 현행規制根據를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美國과日本에서 각각 채택하고 있는企業分割이나 일정규모 이상大企業의株式取得制限 등은 단순히特定市場에서의競爭促進을 초월하는經濟力集中對策의 일환으로서 이制度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나. 企業間相互出資

相互株保有에 따르는弊害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현행法制로는「證券去來法」의 上場企業間 직접적相互株保有禁止가 있지만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商法에서는 모든母會社와子會社(母會社가 40%이상出資)間의直接的相互株保有를 금지하고相互間 40% 미만의相互株保有의 경우에는議決權行使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上位 10大企業集團의系列企業間直接의相互株保有率이 1.84%에 불과하여 이러한規定의 실효성이 미미하며 그나마「商法」은專擔運用當局이 없는 일반적規律法이다.

相互株保有에 수반되는配當淚出, 僞裝企業公開, 經營支配, 與信偏重 등의 부작용이 각각 적절한 규제장치에 의해 제거되더라도 계속하여企業集團의非效率的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것이라면 이것의制限은經濟力集中對策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相互株保有制限은「獨占規制法」의 대상이 되며直接的形態외에도循環의

複合的形態의相互株保有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規制를 실시함에 있어서는相互株保有의 이점을 감안하고一時的·全面的禁止에 따른企業集團의解체와 이로인한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企業集團 전체에 적용되는上限率을 설정하여 자발적으로相互出資를 축소 조정토록 하면서 점진적으로上限率을내리는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 所有分散

經濟力集中對策으로서의所有分散政策은富의分散이라는측면보다는企業所有의分散이라는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所有分散은 우선企業公開를통하여一般國民의資本參與를 유도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所有分散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수행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國民所得水準의 향상과所得分配의改善,企業體質의 강화, 專門經營人의責任經營意識高揚,資本市場의與件造成등과 보조를 맞추어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銀行民營化施策과관련하여企業集團의金融支配에 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 위해市中銀行에대한同一人株式所有制限을 확대함과동시에地方銀行과證券會社에 대하여도同一人株式所有制限을 신설하여生命保險會社의公開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產業構造調整期에 있어서成長企業이나新興企業의所有分散을 촉진시키는수단으로서株式公募를통한企業資金調達을 적극 권장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企業所有分散에기여할뿐만 아니라企業과一般國民의일체감 그리고새로운企業風土의造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 與信管理制度

金融機關에 의한 與信管理制度는 우리나라에서 企業集團에 대한 對策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企業이 內部金融이나 資本市場을 통해 資金을 調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여건 하에서는 항상 金融機關與信에 대한 超過需要가 존재하므로 與信管理를 통해 經濟力集中을 적어도 단기애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與信管理에 의한 對策은 企業體質強化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經濟力集中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對策은 金融機關與信의 본래적 기능을 초월하는 것

이다.

與信管理를 통한 系列企業의 處分과 主力業種 特化의 유효성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上 短期的인 對策은 될 수 있지만 企業集團의 構造에 대한 政策的介入을 法的根據가 분명하지 않은 銀行團 協定에 의하여 長期的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經濟力集中 防止를 위해 앞에서 열거한 諸般 對策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현재 與信management를 통해 행하는 企業集團에 대한 統制機能은 상당부분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與信management는 企業集團에 대한 構造的 政策을 보완하는 限時의이며 補足的 機能만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關係法規』, 1984.
- _____,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審決集(I)』, 1982.
- 尹暢皓·李奎億, 『產業組織論』, 法文社, 1985.
- 李奎億外, 『市場과 市場構造—우리 나라 製造業을 중심으로』,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 84-06, 1984.
- _____. · 李成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院, 1985.
- Ansoff, H.I., "Toward a Strategic Theory of the Firm," (ed.) H.I. Ansoff, *Business Strategy*, London: Penguin Books, 1969.
- Arrow, K.J., "Vertical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s," *Bell Journal of Economics*, Spring 1975.
- Carlton, Dennis W., "Vertical Integration in Competitive Markets Under Uncerta-

int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March 1979.

Coase, R.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ovember 1937, (ed.)

Cournot, A., *Researches Into 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the Theory of Wealth*, translated by N.T. Bacon, Augustus M. Kelley, New York, 1960.

Edgeworth, F.Y., *Papers Relating to Political Economy*, London: Kegan Paul, 1925.

Fama, E.F. and Laffer, A.B., "The Number of Firms and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72.

Green, J.R., *Vertical Integration and Assurance of Market*, Discussion Paper No. 383, Ha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1974.

Kay, N.M., *The Evolving Firm: Strategy*

- and Structure in Industrial Organization*, London: Macmillan, 1982.
- Leff, N.A., "Industrial Organiz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the Developing Country: The Economic Group"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6, No.4, July 1978.
- _____, "'Monopoly Capitalism' and Public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Kyklos* 1979, Fasc. 4.
- Leibenstein, H.,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8.
- Malmgren, H.B., "Information, Expectations and the Theory of the Fi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1961.
- Merhav, M., *Technological Dependence, Monopoly and Growth*, Pergamon, London 1969.
- Robinson E.A.G., *The Structure of Competitive Industry*. 3rd rev.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1) 1958.
- Scherer, F., et al., *The Economics of Multi-plant Operation: An International Com-*
- parisons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Steiner, P.O., *Mergers: Motives, Effects, Polici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5.
- Stigler, G.J.,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1968.
- Vernon, J.M. and Graham, D.A., "Profitability of Monopolization by Vertical Inte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ly/August 1971.
- Werren-Boulton, F.R., *Vertical Control of Markets: Business and Labor Practices*: Cambridge, Mass.: Ballinger 1978.
- Williamson, O.E.,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1975.
- _____, "Economies as an Antitrust Defense Revisited," *Welfare Aspects of Industrial Markets*, (ed.) Jacquemin, A.P. and de Jong, H.W., Leiden: Martinus Nijhoff, 1977.